지속경영위원회 규정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이사회 내에 설치된 지속경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고 한다.)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구성)

① 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 및 해임한다.

②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,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독립이사로 구성한다. <개정 2026.6.24>

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이사회 또는 위원회에서 선임한다.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회의 사무 전반을 처리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
⑥ 위원이 사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2항의 위원의 수 또는 독립이사의 구성비율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 요건에 충족되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6.6.24>

제4조(기능)

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.

① 회사의 반독점, 반부패, 하도급 등을 포함한 준법경영체계 및 활동 심의 [신설 2020.5.27]

② 회사의 사회적 가치 창출 관련 사항 심의 [신설 2026.6.24]

③ 회사의 지속가능성 또는 SHE(Safety, Health, Environment)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·의결 [신설 2026.6.24]

(1) 지속가능성 중대성 평가 절차, 기준 및 결과

(2) 지속가능성 관련 중장기 목표

(3) 제 3 항 제 2 호에 따라 결정된 목표와 관련한 전략 수립 및 이행 점검

(4) 이사회에서 의결한 안전보건 계획에 관한 반기 실적 및 향후 계획

(5) 경영상황 등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SHE 에 관한 사항

④ 기타 위원회에서 준법경영 또는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[신설 2026.6.24]

⑤ <삭제 2021.5.7>

제5조(회의)

① 위원회는 매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이사회규정 제13조의2 제5항에 따라 위원회는 심의·의결한 내용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 직후 처음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심의·의결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한다.

제6조(의사록)

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한다.

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과 그 결과 등을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7조(관계인의 출석 등)

①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, 지속경영 관련 담당 임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
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 지원)

이사회사무국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구성원의 자료 수집 등의 요구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전반적인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.

부칙(2018년 3월 28일 시행)

이 규정은 2018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년 5월 27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년 5월 7일 시행)

이 규정은 2021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6년 6월 24일 시행)
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독립이사에 관한 규정)
독립이사 명칭 변경에 따른 제3조 제2,6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